

수원고등법원 2024. 7. 18 선고 2023나29146(본소), 2023나29153(반소) 판결

[보증채무금 · 대여금]

재판경과

수원고등법원 2024. 7. 18 선고 2023나29146(본소), 2023나29153(반소)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. 11. 24 선고 2022가단123548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

담당변호사 설경수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

변론종결 2024. 5. 30.

판결선고 2024. 7. 18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. 11. 24. 선고 2022가단123548(본소),

2022가단123555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2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,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제1심에 제출된

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, 제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
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3쪽 1행의 “책임보장하기로”를 “책임지고 변제하기로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3쪽 6행의 “매월”을 “매월 말일에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4쪽 하7행의 “2016. 10. 29.”을 “2016. 12. 29.”로 고쳐 쓴다.○ 제1심판결 제4쪽
하4행의 “B은”을 “피고는”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8쪽 1행의 “기다기리면”을 “기다리면”으로 고쳐 쓴다.

2. 추가 판단 부분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가 보증한 것은 이 사건 약정서 제3항에서 정한 피고의 추가 투자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일
뿐,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의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한 사실이 없다.

나. 판단

이 사건 약정서 제2항에서 C, D이 “2016. 3. 31.까지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나눠서 변제한다.”라고
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약정서 제3항에서
“증액투자금 2억 원에 대해서는 2016. 4. 30.까지 나눠서 변제한다.”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
수 있으나, 원고가 이 사건 골재채취사업에 투자하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, 원고와 피고 및 C, D의
관계,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, 을 제4호증,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
기재와 제1심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서명, 날인한 것을 이 사건
약정서 제3항에서 정한 추가 투자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
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

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제정, 판사 정진아, 판사 김대권